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06.08

제출년월일 : 2012. 5. .

제출자 : 안산시장

의안
번호

2274

□ 제안이유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
- 경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건축법 시행령」등 관련 법 개정 시 변경 조문 반영에 따른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임기기간 내에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그 인원만큼의 재위촉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함(제21조의 제2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제22조제2항)
- 경관 심의 대상 시설물 중 구청·사업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건축 설계경기(현상설계)에 대하여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복심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별표1) 경기도 표준디자인과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 등 기 디자인 심의에서 통과한 도시구조물 또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사 방지(별표 1)
-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별표 1)
- 일반 시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제1,4, 5, 6, 7, 8, 10, 11, 12, 13, 14, 18, 19, 24, 25, 28, 29조)

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가, 나목 및 제6호, 제7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2. 3.12 ~ 3. 31.(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계획

○ 현행조례(안산시경관조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8항,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8항 및 제2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4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이외에”를 “외에”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1조의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다만 당연직은 제외한다.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 현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상임운영담당 김 영국
	담당자 성명·전화	박향미 (행정 2632)

[별표1]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1. 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가, 나목 및 제6호, 제7호 해당되는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² 초과인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하는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주) 단,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입체교차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볼라드	

주) 단, 경기도 표준디자인 및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 시설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관광안내도·안내표지판 나. 동상·기념비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다. 가로 화분대	나. 가로 녹지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다. 공중화장실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등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교통 감시시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전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시계탑, 조명탑		

주) 단, 경기도 표준디자인 및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시행에----- -----</p>
<p>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6. (생략) 7.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 ----- -----이란-----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p>
<p>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p> <p>① ~ ④ (생략) 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p> <p>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해서는---범위에서----- -----</p>
<p>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 ----- ---이란----- -- 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 ----- ---이란----- 1. ~ 5. (현행과 같음)</p>
<p>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통합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괄-----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p>

현 행	개 정 안
	한다.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대해 서는-----범위에서----- -----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⑨ -----외에----- -----등에----- -----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생략)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 -----
제11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제11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 ----- ---란-----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 ----- ---이란-----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협정서의 내용) 법 제16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제13조(경관협정서의 내용) ----- ----- ---이란-----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 ---이란-----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8. (생략)</p>	<p>----- ----- <u>이란</u>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u>대하여는</u>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p>	<p>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해서는</u> ----- -----</p>
<p>제2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제2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다만 당연직은 제외한다.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p>제22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2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 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p>	<p>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p>

현 행	개 정 안																		
<p>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7. (생략) ② (생략)</p> <p>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u>이란</u> -----</p> <p>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u>이란</u> -----</p> <p>제28조(수당 등) ----- <u>범위에서</u> ----- ----- -----.</p> <p>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1]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1. 건축물	[별표1]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1. 건축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설물의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공공건축물</td> <td style="padding: 10px;">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축물 </td> <td style="padding: 10px;"></td> </tr> <tr> <td style="padding: 10px;">민간건축물</td> <td style="padding: 10px;">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 나목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td> <td style="padding: 10px;"></td> </tr> </tbody> </table>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축물		민간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 나목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분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설물의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공공건축물</td> <td style="padding: 10px;">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전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축물 </td> <td style="padding: 10px;"></td> </tr> <tr> <td style="padding: 10px;">민간건축물</td> <td style="padding: 10px;">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가, 나목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신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td> <td style="padding: 10px;"></td> </tr> </tbody> </table>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전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축물		민간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가, 나목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신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축물																		
민간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 나목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전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전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축물																		
민간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가, 나목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되는 신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초과인 신축·대수선·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주) 단,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현

행

개정안

2. 도시구조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임체교차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블라드	

3. 가로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 시설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관광안내도·안내표지판 나. 동상·기념비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등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교통 감시시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접용허가 대상 시설물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전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시계탑, 조명탑	

2. 도시구조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건축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임체교차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블라드	

주) 단, 경기도 표준디자인 및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3. 가로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 시설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관광안내도·안내표지판 나. 동상·기념비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등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교통 감시시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접용허가 대상 시설물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전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시계탑, 조명탑	

주) 단, 경기도 표준디자인 및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